

# 『유럽연합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정(EU) 2019/1021 개정 제안 - 부속서 I에 있는 PCB의 UTC 한계치 설정』 심층분석 보고서

2025. 3.

TBT 통보 여부	미통보	HS Code	전제품
통보국	유럽연합	전년도 수출규모 (천불)	63,781,901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 [ 목 차 ]

1. 규제 개요 .....	1
2. 제정 세부내용 .....	2
3. 관련 법령 및 표준 .....	5
붙임. 규제 참고자료 .....	6

# 1

## 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규정 (EU) 2019/1021을 개정하도록 동 규정 제안을 발표함
  - \*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협하게 하는 물질

- (규제요지) 동 규정 제안에서는 기존 규정 (EU) 2019/1021의 부속서 I 파트 A의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항목에 의도치 않은 미량 오염 물질(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UTC) 한계값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TBT 통보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통보</li> </ul>	<table border="1"> <tr> <td>통보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td> </tr> <tr> <td>고시일</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2월 18일</li> </ul> </td> </tr> </table>	통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2월 18일</li> </ul>
통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고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2월 18일</li> </ul>					
규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규정(EU) 2019/1021 - 제안된 개정안 - (부속서 I에 있는 PCB의 UTC 한계치 설정) 규정 초안, 2025년 2월</li> <li>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Regulation (EU) 2019/1021 - Proposed Amendment - (on setting an UTC limit value for PCBs in Annex I) Draft Regulation, February 2025</li> </ul>					
규제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연합 집행위원회</li> <li>EU Commission</li> </ul>					
요구사항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B UTC 한계값 준수</li> </ul>					
제·개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정 초안</li> </ul>					
채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의견수렴 마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3월 18일</li> </ul>					
발효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U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li> </ul>					
준수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 (적용대상 및 수출규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제품</li> <li>All Products</li> </ul>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B, PCB 혼합물 또는 PCB가 포함된 제품</li> </ul>		
對발행국 수출액 (전년기준, 천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3,781,901</li> </ul>	HS Co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제품</li> </ul>

## □ (제정 세부내용)

- (개요) EU에서는 POPs로부터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규정 (EU) 2019/1021을 개정하도록 동 규정 제안을 발표함
  - 동 제정안에서는 기존 규정 (EU) 2019/1021의 부속서 I 파트 A의 PCB\* 항목에 UTC 한계값을 추가\*\*하여 해당 한계값을 초과하는 PCB, PCB 혼합물 또는 PCB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 \* 염소가 1개에서 10개까지 결합한 구조를 갖는 화합물로, 우수한 열안정성, 절연성을 가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었으나 생물독성, 환경매체 축적성 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스톡홀름 협약 규제물질로 등재된 바 있음<sup>1)</sup>
    - \*\* 현행 규정 (EU) 2019/1021의 경우 UTC 한계값 없이 PCB가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PCB에 어떠한 UTC 한계값이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규제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음
- (PCB의 UTC 한계값 설정) 동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UTC 한계치 이하로 PCB가 존재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PCB, PCB 혼합물 및 PCB 함유 제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금지를 면제하도록 기존 규정 (EU) 2019/1021의 부속서 I 파트 A를 개정하도록 함
  - 규정 (EU) 2019/1021 제4조 제1항 제(b)호에 따라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PCB가 UTC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CB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
  - 동 제정안에 따라 규정 (EU) 2019/1021 부속서 I 파트A의 PCB 항목 ‘중간용도 또는 기타 규격에 대한 특정 면제’ 열의 조건 일부가 추가되어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PCB 농도 합계가 0.2 mg/kg(0.00002 중량%)로 존재하는 경우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함
  - 단, 유기안료 및 유기염료 그리고 이를 함유한 혼합물 및 제품\*의 경우 ①(발효 후) PCB 농도 합계가 25 mg/kg(0.0025 중량%) 이하, ②(발효 후 3년 후) 10 mg/kg(0.001 중량%) 이하인 경우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규정함
    - \* 현재 과학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유기안료 및 유기염료 내 PCB는 0.2 mg/kg보다 높게 존재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완화된 UTC 한계값을 설정함

[표 1] 신규대조표

현행(규정 (EU) 2019/1021)	개정안(동 제정안에 따라 개정)
부속서 I	부속서 I
파트 A	파트 A
협약과 의정서에 등재된 물질과 협약에만 등재된 물질	협약과 의정서에 등재된 물질과 협약에만 등재된 물질

1) 국내 다매체 환경 중 폴리염화비페닐(PCB)의 장기경향 추정, 한국환경분석학회지 제11권(제2호) 144-154(2008)

현행(규정 (EU) 2019/1021)				개정안(동 제정안에 따라 개정)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중간용도 또는 기타 규격에 대한 특정 면제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중간용도 또는 기타 규격에 대한 특정 면제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	1336-36-3 및 기타	215-64 8-1 및 기타	<p>지침 96/59/EC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발효시점에 이미 사용 중인 제품은 사용이 허용된다.</p> <p>회원국은 0,005 % 이상의 PCB를 함유하고 부피가 0,05 dm<sup>3</sup> 이상인 장비(예: 변압기, 커패시터 또는 기타 액체 스톱이 포함된 용기)를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 까지 식별하여 사용에서 제거해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p>이 항목의 목적상 제4조 제1항 제b)호는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존재하는 PCB 농도 합계가 0,2 mg/kg(0,00002 중량%)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p> <p>ISO 787 - 28/2019에 따른 분석 방법을 통해 결정되거나 ISO 787 - 28/2019와 같거나 유사한 정확도와 성능을 갖는 것으로 입증된 유기 안료 및 유기 염료 그리고 유기 안료 또는 유기 염료를 함유한 혼합물 및 제품의 경우, PCB 농도 합계에 제4조 제1항 제b)호를 적용한다.</p> <p>- 이 규정이 발효 되면 25 mg/kg(0,002 중량%) 이하</p> <p>- [O] 발효되고 3년 후</p>

현행(규정 (EU) 2019/1021)				개정안(동 제정안에 따라 개정)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중간용도 또는 기타 규격에 대한 특정 면제	물질	CAS 번호	EC 번호	중간용도 또는 기타 규격에 대한 특정 면제
							날짜 삽입 이후 10 mg/kg <sup>0.001</sup> 중량% 이하

[표 2] 규정 (EU) 2019/1021

**제3조 - 제조, 시장 출시, 사용 및 물질 목록 관리**

1. 부속서 I에 등재된 물질의 단독, 혼합물 또는 완제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제4조에 따라 금지된다.

2. 부속서 II에 열거된 물질의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은 그 자체로, 혼합물로 또는 제품 내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제4조에 따라 제한된다.

(:)

**제4조 - 통제 조치의 면제**

1. 제3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실험실 규모의 연구 또는 참조 표준으로 사용되는 물질;

(b) 부속서 I 또는 II의 관련 항목에 명시된 대로,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서 의도치 않은 미량 오염물질로 존재하는 물질

(관련 법령)

- Regulation (EU) 2019/1021<sup>2)</sup>

---

2) [https://eur-lex.europa.eu/eli/reg/2019/1021/oj/eng#anx\\_1](https://eur-lex.europa.eu/eli/reg/2019/1021/oj/eng#anx_1)

(규제원문 출처)

- 유럽연합 관보

- 원문링크: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322-Persistent-organic-pollutants-Polychlorinated-biphenyls-PCB-\\_en](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4322-Persistent-organic-pollutants-Polychlorinated-biphenyls-PCB-_en)